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 법 인

## 대 한 병 원 협 회



수 신 병원장

참 조

제 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관련 안내

- 1. 관련 근거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2603(2024.4.25.)
- 2. 「마약류관리법」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라 2024.6.14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 내용고형제, 외용제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3. 이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'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' 정보연계 기능 개발 관련 다운로드센터(dev.nims.or.kr)를 운영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사용하는 상용 또는 비상용 (자체 및 외주개발 포함)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가이드와 샘플 코드를 제공하는 등 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적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4. 아울러,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정보연계 기능 개발 시 의료기관 명의 회원 가입 및 조회 방식\*도 적용 가능하도록 정보연계 방식을 추가했음을 알려와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\* 이 경우, 의료기관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환자 투약내역 조회 가능

기존	변경
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'마약류 의료쇼핑 방지	<현행과 같음>
정보망'회원가입 및 조회	
<신 설>	의료기관 명의로 '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'
	회원가입 및 소속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조회

※ 투약이력 조회 관련 문의: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(1670-6721)

## 대한병원협회

## 사원 박시은 팀장 최명희 국장 장은혜

시행: 정책국 제2024-140호(2024.4.29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/ www.kha.or.kr 전화 02-705-9216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: 02-705-9209) E-mail: parkse@kha.or.kr